
Policy and Law Report _Vol.154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09.19.~ 2022.09.25.) -

September 26, 2022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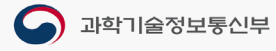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기획재정부	<p> • 「<u>민간-공공기관 협력강화 방안</u>」 발표 </p> <p> 기획재정부는 제12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보고·확정한 바,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특히, 해외 네트워크 등과 같은 유·무형의 자산·역량을 민간에 개방·공유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위치한 공공기관 규제를 내실있게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됨 </p> <p> 주요 내용으로는 </p> <p> ① (데이터 전면개방) 국민적 관심이 높은 연금, 의료, 부동산 등 10대 핵심 공공기관의 양질의 중요 데이터 및 원천데이터 개방 추진 </p> <p style="text-align: center;"> < 개방 데이터 및 기대효과 >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기관명</th> <th style="width: 20%;">데이터</th> <th style="width: 60%;">기대효과</th> </tr> </thead> <tbody> <tr> <td>건강보험심사평가원</td> <td>MRI, CT 등 의료영상 데이터</td> <td>정상데이터와 이상데이터를 함께 분석해 특정 질환발생을 진단하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개발 등 사업화 가능</td> </tr> <tr> <td>부동산원</td> <td>청약/입주물량 데이터</td> <td>청약 및 입주 물량 데이터를 활용한 부동산정보 산업 콘텐츠 개발 및 중개·이사·가전·인테리어 수요 예측 등 사업화 가능</td> </tr> <tr> <td>건강보험공단</td> <td>인플루엔자, 천식, 아토피 등 데이터</td> <td>빅데이터 활용한 의료수요 예측 및 감염병 확산예측 모델 개발 및 사업화 가능</td> </tr> <tr> <td>철도공사</td> <td>철도고객 관광패턴 데이터</td> <td>지역별 철도이용객의 선호 방문지 등 관광패턴 데이터 제공을 통해 여행업계와 지역상권의 마케팅전략 개발 가능</td> </tr> <tr> <td>LH공사</td> <td>토지시세 데이터</td> <td>LH토지 낙찰가, 인근 토지 공시지가 등을 결합해 분양 토지 낙찰가 등 예측 서비스 제공 및 사업화 가능</td> </tr> <tr> <td>국민연금공단</td> <td>지역별 국민연금 연금종별 수급자현황</td> <td>고령자를 위한 금융이동서비스 등 민간서비스 개발에 활용하여 연금수급자의 복지 증진 가능</td> </tr> </tbody> </table> <p> ② (특허·실용신안 개방) 민간수요가 높은 의료, 바이오, 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미활용 특허 중 20%를 민간에게 무료 나눔 (경제효과 1조원 규모) </p> <p> ③ (공공기관 규제혁신) 공공기관 규제를 연내 실태 조사하고, 경제 규제혁신 TF를 통해 주무부처와 함께 전면 정비 </p>	기관명	데이터	기대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MRI, CT 등 의료영상 데이터	정상데이터와 이상데이터를 함께 분석해 특정 질환발생을 진단하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개발 등 사업화 가능	부동산원	청약/입주물량 데이터	청약 및 입주 물량 데이터를 활용한 부동산정보 산업 콘텐츠 개발 및 중개·이사·가전·인테리어 수요 예측 등 사업화 가능	건강보험공단	인플루엔자, 천식, 아토피 등 데이터	빅데이터 활용한 의료수요 예측 및 감염병 확산예측 모델 개발 및 사업화 가능	철도공사	철도고객 관광패턴 데이터	지역별 철도이용객의 선호 방문지 등 관광패턴 데이터 제공을 통해 여행업계와 지역상권의 마케팅전략 개발 가능	LH공사	토지시세 데이터	LH토지 낙찰가, 인근 토지 공시지가 등을 결합해 분양 토지 낙찰가 등 예측 서비스 제공 및 사업화 가능	국민연금공단	지역별 국민연금 연금종별 수급자현황	고령자를 위한 금융이동서비스 등 민간서비스 개발에 활용하여 연금수급자의 복지 증진 가능	2022-09-23
기관명	데이터	기대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MRI, CT 등 의료영상 데이터	정상데이터와 이상데이터를 함께 분석해 특정 질환발생을 진단하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개발 등 사업화 가능																					
부동산원	청약/입주물량 데이터	청약 및 입주 물량 데이터를 활용한 부동산정보 산업 콘텐츠 개발 및 중개·이사·가전·인테리어 수요 예측 등 사업화 가능																					
건강보험공단	인플루엔자, 천식, 아토피 등 데이터	빅데이터 활용한 의료수요 예측 및 감염병 확산예측 모델 개발 및 사업화 가능																					
철도공사	철도고객 관광패턴 데이터	지역별 철도이용객의 선호 방문지 등 관광패턴 데이터 제공을 통해 여행업계와 지역상권의 마케팅전략 개발 가능																					
LH공사	토지시세 데이터	LH토지 낙찰가, 인근 토지 공시지가 등을 결합해 분양 토지 낙찰가 등 예측 서비스 제공 및 사업화 가능																					
국민연금공단	지역별 국민연금 연금종별 수급자현황	고령자를 위한 금융이동서비스 등 민간서비스 개발에 활용하여 연금수급자의 복지 증진 가능																					

부처	내용	일시
<p>과학 기술정보 통신부</p>	<p>• 「연구개발 디지털화 촉진방안」 발표</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 과정에 인공지능, 디지털 복제물(트윈)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기술혁신을 가속화하는 「연구개발 디지털화 촉진방안」을 발표함</p> <p>인공지능, 디지털 복제물 등이 연구현장에 적극 도입되어 수십 년이 걸리던 기술적 난제를 수 분만에 해결할 수 있는 연구개발의 디지털화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음. 이번 방안은 디지털 연구혁신을 지원하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연구개발 전 과정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성과창출과 연구효율성 향상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수립됨</p> <p>주요 논의내용으로는</p> <p>① (전략 1) 첨단기술-디지털 융합연구 활성화 - 디지털 융합 선도연구 프로젝트 지원(9개, '22~), 지능형 실험실 구축·확산</p> <p>② (전략 2) 연구데이터 수집 및 활용체계 고도화 - 수요 기반 연구데이터 수집 확대, 연구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확립 - 연구데이터 분석 모형 개발(~'27, 40개), 디지털 복제물 가상 실험환경 구축</p> <p>③ (전략 3) 연구개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 조성 - 디지털 역량도 겸비한 양손잡이형 연구인력 양성 (1만 명, ~'27) - 통합 연구행정 디지털 플랫폼, 연구행정 근접지원 인공지능 챗봇 개발 ('23~)</p>	<p>2022-09-20</p>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디지털 연구 혁신의 패러다임 전환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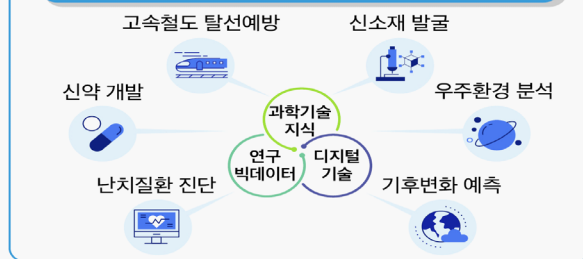
연구개발 디지털화
선도모델 8개 도출

디지털 역량 겸비 핵심
연구인력 10,000명 양성

연구데이터 수집과 활용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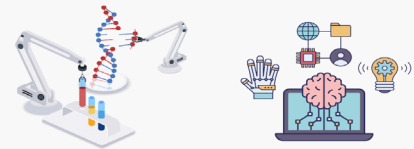
1. 첨단기술-디지털 융합 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디지털 융합연구 선도프로젝트



스마트 실험실 구축 및 확산

- ▶ 로봇실험실
- ▶ 실험 자동화
- ▶ 원격실험



▶ 연구분야별 특성에 따라 디지털 융합 고도화를 위한 세부전략 순차적으로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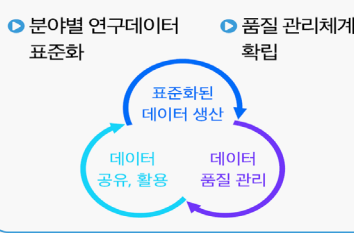
2. 연구 데이터 수집에서부터 활용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고도화 하겠습니다.

(수집) 핵심 데이터 수집 확대

- ▶ 수요 기반 연구데이터 생산, 수집
 - ▶ 데이터 저장소 연계 강화
- 인체 유래물 데이터, 핵심 소재데이터, 위성 관측 데이터

데이터 접근성 ↑

(공유) 연구 데이터 품질 고도화



데이터 신뢰성 ↑

(활용) 데이터 분석 환경 구축

- ▶ AI 기반 연구 데이터 분석 모델
- ▶ 디지털 트윈 가상실험환경
- ▶ 슈퍼컴퓨팅 자원 공유

데이터 활용성 ↑

3. 인력양성, 연구기관 디지털 전환 등 디지털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디지털 역량도 갖춘 핵심 연구인력 양성

- ▶ 연구분야 석·박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 확대
- ▶ 기초에서 심화까지 연구자 대상 AI 통합교육



연구지원 방식의 디지털화 촉진

- ▶ 연구행정 지원의 지능화
- ▶ 통합 연구행정 고도화
- ▶ 디지털 협업 연구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행정 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3.1.1. 시행 예정) <p>자치경찰사무의 수행을 위한 무기·탄약에 대해서는 국제입찰로 계약하지 못하도록 하고, 규격입찰·기술입찰에 대한 전문적 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규격·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의 신기술 적용제품을 4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입찰서의 원칙적 제출방식을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일시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며,</p> <p>재정지출 부담 입찰에 있어서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시·도지사의 심사기준 제정시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를 사후통보 절차로 변경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요청서 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자도 계약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절차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높이려는 것임</p>	2022-09-20
산업통상 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9.22. 시행) <p>외국인투자를 신고하거나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국가안전유지를 위한 투자심사 관련 서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2022-09-22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9.25. 시행) <p>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또는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행정계획을 명확하게 규정함</p> <p>이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시·도 발전계획 등을 통보 대상 행정계획에 추가하고, 지역 온실가스 통계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내 통계관리위원회를 국가통계관리위원회와 지역통계관리위원회로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탄소중립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단체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2022-09-20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중소벤처 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9.20. 시행) <p>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대체초지조성비, 물이용부담금 등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개정됨</p> <p>이에 따라,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을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는 창업기업으로 정하려는 것임</p>	2022-09-20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산업통상 자원부	<p>•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 <p>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신사업분야 진출 등 사업재편 활성화 및 투자 지원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업무와 권한을 위탁받은 신탁회사가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복귀기업이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안에서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내기업의 복귀를 지원하는 한편,</p> <p>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 입주가능 시설을 일부 금지시설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통해 입주가능 시설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업무와 권한을 위탁받은 신탁회사가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제6항제12호나목 신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수도권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하는 기업에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을 추가함 (안 제26조제8호) ③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지원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의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식으로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허용 대상을 변경함 (안 제36조의4제2항) <p>※ 의견 제시기간 : 9/21(수)~10/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로 제출</p>	2022-09-21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환경부	<p>•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 <p>자연공원내 행위제한, 까다로운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불편으로 시설 설치 및 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대상 사무 축소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며, 국민들이 알기 쉽게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유어장 설치절차 간소화 (안 제2조제3호 및 제14조의3제3항제7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어장을 공원계획변경, 공원위원회심의, 공원사업시행허가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한 공원시설에서 삭제하고,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허용행위 사항으로 변경하여 시설설치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 <p>② 공원자연환경지구내 행위허가 완화 (안 제14조의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해안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내 탐방객 편의를 위해 한시적(4개월) 허용시설에 야영장을 추가 - 상수도, 하수도 등 공익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를 공원구역의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로 제한하고 있으나, 현장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공원구역 주변지역의 주민을 위해서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p>③ 고유식별정보 처리대상 사무 축소 (안 제45조의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년월일로 처리가 가능한 사무는 고유식별정보 처리대상 사무에서 삭제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최소화 <p>④ 과태료 정비 (시행령 별표3 제2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수별 과태료 금액을 법률상 상한액에 맞추어 조정함으로써 위반정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화 <p>※ 의견 제시기간 : 9/19(월)~10/10(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자연공원과)로 제출</p>	2022-09-19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고용 노동부	<p>•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 <p>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29호, 2022.6.10. 공포, 2022.12.1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기준 (안 제18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간 고용노동부고시로 규정하고 있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전문인력·시설 등에 관한 지정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p>②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취소 등 사유 (안 제18조의2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간 고용노동부고시로 규정하고 있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지정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유 중 ‘운영성과의 미흡 등’에 관한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실시하는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평가 결과 연속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p>※ 의견 제시기간 :9/23(금)~11/2(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고용노동부(외국인력담당관실)로 제출</p>	2022-09-23
	<p>•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 <p>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29호, 2022.6.10. 공포, 2022.12.11. 시행)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0000.00.00.공포, 0000.00.00.시행)이 개정되고, 농·어업 5인미만 개인사업장의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시 산재보험 임의가입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약약서를 제출하는 내용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844호, 2022.8.2.공포, 2023.2.3.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안 제11조의3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간 고용노동부고시로 규정하고 있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2022-09-23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p>필요한 사항인 지정신청자의 지정신청서·인력 현황·교육장별 시설 장비 현황 제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 유효기간, 취업교육기관 지정서 교부 등의 내용을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에 실무적으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p>②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처분 기준 (안 제11조의 4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간 고용노동부고시로 규정하고 있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한 지정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의 처분 기준을 별표로 규정 <p>③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협약서 서식 (안 제5조제5항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 5인미만 개인사업장의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시 산재보험 임의가입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협약서를 제출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한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협약서 서식을 별지로 규정하려는 것임 <p>※ 의견 제시기간 :9/23(금)~11/2(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고용노동부(외국인력담당관실)로 제출</p>	
국토 교통부	<p>•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 <p>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입('21.9.21) 이후 지구지정 등 사업을 본격 추진중으로, 복합지구 내 공공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조정하고, 다가구주택 등 임대 수입에 의존하는 자에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항을 정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복합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 조정 (안 제3조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 복합사업 시행시 건설되는 공공주택의 유형별 비율을 개별 사업지 여건에 따라 보다 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의무 건설 비율을 조정 <p>② 다가구주택 및 상가 임대료 수입 의존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안 제35조의10제5항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업비의 범위에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도심 복합사업으로 수입이 중단되는 다가구주택 및 상가 임대료 수입 의존자에게 그 수입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p>③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 권한 명확화 (안 제35조의12제3항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규정·예산 등 중요사항은 주민협의체의 권한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과 주민대표회의 간 분쟁 소지를 미연에 방지 	2022-09-23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p>※ 의견 제시기간 :9/21(수)~10/31(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도심주택공급총괄과)로 제출</p> <p>•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 <p>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입('21.9.21) 이후 지구지정 등 사업을 본격 추진 중으로, 국회 의결일('21.6.29.) 후부터 후보지 발표 전까지의 기간동안 지구내 주택을 취득한 자 중 1주택 소유자에게는 특별공급권을 부여하고,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순위를 상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세입자 보호 (안 제11조의5 및 별표 6의3 제5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지구 내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순위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음을 본문에 명시 <p>② 현금청산자 보호 (안 별표 6의5 제2호마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의결일('21.6.29.) 후부터 후보지 발표 전까지의 기간동안 지구내 주택을 취득한 자 중 1주택 소유자에게는 복합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권을 부여 <p>③ 도심복합사업 사전청약 근거 마련 (안 제13조제8항제3호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p>※ 의견 제시기간 :9/21(수)~10/31(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도심주택공급총괄과)로 제출</p>	2022-09-21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p>•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 <p>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의 공원·녹지 확보기준 완화 등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공포('22.6월)되어 시행 예정('22.12월)임</p> <p>이에 따라 공원·녹지 확보기준의 완화범위 등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효율적인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를 연장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중대한 변경요건을 완화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혁신지구 사업규모 상한 상향 및 삭제 (안 제2조의2, 안 제4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범위의 혁신지구 사업을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면적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주거재생혁신지구의 경우, 유사사례 및 기존 도시재생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면적 상한을 20만㎡까지 상향 ②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 연장 (안 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성 및 경험 등을 가진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고 유사사례 등을 참조하여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 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중대한 변경 요건 완화 (안 제2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지원을 위해 총사업비가 1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거나 사업을 신설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적용 ④ 건축규제 완화 규정 개정 (안 제3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건폐율의 최대한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완화할 수 있으나, 신속한 행정절차를 위해 지자체 조례 없이도 건폐율 최대한도 완화가 가능토록 법을 개정하였으므로 지자체 조례로 완화범위를 규정토록 한 시행령 조문을 삭제 ⑤ 혁신지구사업과 중복지정이 가능한 다른 개발사업 확대 (안 제4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위해 혁신지구사업과 중복지정이 가능한 사업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포함하고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도 중복지정이 가능하도록 함 ⑥ 혁신지구 통합심의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49조의2 및 안 제49조의3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지구 통합심의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위원 수(數),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해촉 규정 등을 신설 	2022-09-21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p>⑦ 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규정 개정 (안 제51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주택·상가 등 도시재생 공익시설의 안정적인 공급 등을 위해 혁신지구사업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에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2항제2호의2에 따라 출자 또는 용자를 받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를 추가 <p>⑧ 주거재생혁신지구 공원·녹지비율 완화 (안 제53조의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규모가 작은 경우(1,000세대 미만)에는 사업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공원·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고, 사업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1,000세대 이상)에는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 적용 <p>⑨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요건 (안 제54조의3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하고 효율적인 혁신지구 사업 추진 등을 위해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 중 이주민 주거안정대책 관련 임대주택의 사용계획 변경 등을 제외하고는 경미한 변경으로 적용하고, 상위계획인 혁신지구계획의 변경사항을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 다른 개발사업(중전사업)의 절차에 따라 변경된 사업계획을 혁신지구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도 경미한 변경으로 적용 <p>※ 의견 제시기간 :9/21(수)~10/31(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도시정비정책과)로 제출</p>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p>법제사법위원회</p>	<p>•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4인)」</p> <p>현행법에서는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 주주총회일로부터 6주 전까지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p> <p>그러나 최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면서 주주총회일을 6주 이내로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주주제안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p> <p>실례로 2021년 한 해 동안 개최된 임시주주총회를 대상으로 주총결의 공시일부터 주주총회 일까지의 기간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임시주주총회(446건 중 182건, 40.8%)가 42일 이하의 기간으로 6주 전 주주제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음</p> <p>이에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상장회사의 이사·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주주제안권의 행사로 추천된 이사 또는 감사도 후보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제안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임 (안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5)</p>	<p>2022-09-20</p>
<p>정무위원회</p>	<p>•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4인)」</p> <p>현행법에 따르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하되, 협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p> <p>그러나 위 규정에 따라서 주주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이 해당 주식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심지어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막기 위해 해당 법인에게 인위적으로 주가를 억누르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사례도 있다는 의견이 있음</p> <p>이에 매수가격을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 대신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가액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임 (안 제165조의5제3항 등)</p>	<p>2022-09-19</p>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등 11인)」</p> <p>현행법에서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공익성 및 신용질서 보호 등을 위해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금융회사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에 대하여 금융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적격성 유지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일정 기간마다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p> <p>그런데 금융회사들의 실제 지배구조 운영이 여전히 투명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 금융회사 경영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금융회사 최대주주의 심사요건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p> <p>이에 감사위원 선임 시 자격요건을 법률로 규정하고 최대주주의 자격심사의 결격사유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칙을 받은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금융회사 경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9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p>	2022-09-19
	<p>•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등 13인)」</p> <p>현행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금융거래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등의 안전성 확보의무,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p> <p>그런데 지난해 머지포인트 사태로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보호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회사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보호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p> <p>이에 금융회사등의 이사회의 금융보안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하고, 전자금융업무 및 정보자산의 보안 등을 총괄하는 금융보안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며, 이용자 예탁금 보호를 위한 별도관리 및 이용자 우선변제권을 도입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이용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금융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금융보안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금융보안책임자는 금융보안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금융위원회에 매년 제출하도록 함 (안 제21조의2)</p> <p>② 금융회사 등의 이사회가 금융보안 체계, 전자금융업무의 지속성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금융보안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함 (안 제21조의7 신설)</p>	2022-09-20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③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전자지급거래와 관련하여 받은 금전을 은행 등에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해당 금전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이용자 등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를 보장함 (안 제21조의8 신설)</p> <p>④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금융플랫폼을 운영하는 자 등에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그 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특례를 둠 (안 제27조의2 신설)</p>	
	<p>•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등 11인)」</p> <p>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팩토링 제도를 두어, 중소기업자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을 신용보증기금이 매입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해당 매출채권 만기일에 채무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음</p> <p>동 제도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2021년부터 시범 운용되던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에 법제화된 것임</p> <p>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서비스 대상을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당초 시범 운용 시에 포함되었던 중견기업은 팩토링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p> <p>이에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서비스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시켜, 중견기업도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성장과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3조의5 등)</p>	2022-09-20
	<p>•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p> <p>현재 공공 건설공사 부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구축·이용하고, 임금을 구분 지급함으로써 하도급거래의 불공정 관행이나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상당히 개선되었음</p> <p>그런데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보듯이 민간 부문의 하도급거래에서는 임금이나 자재 대금 체불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p> <p>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공공 건설공사에서와 같이 발주자로 하여금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 전용계좌 개설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p>	2022-09-20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각 이해당사자들이 하도급대금의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14조의2 신설 등)</p>	
<p>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p>	<p>•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의원 등 13인)」</p> <p>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되,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와 전력정책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계획을 확정된 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p> <p>이러한 기본계획은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전망, 발전설비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의 주요 에너지 계획 중 하나로서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원회가 개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있어 중요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p> <p>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하여 주요 에너지 계획에 대한 국회의 심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제2항)</p>	<p>2022-09-19</p>
	<p>• 「디지털포렌식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수진의의원 등 10인)」</p> <p>“디지털포렌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휴대전화나 컴퓨터 또는 이동식 저장매체를 분석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이용되게 하는 ‘기법’으로 인식되고 있음</p> <p>IOT(사물인터넷), ICT(정보통신기술) 등의 다양한 발전과 함께 디지털포렌식은 이러한 형사사건의 절차 중 하나의 기법을 넘어 민사소송, 재난·재해 원인 분석, 기업보안 서비스 등 점차 그 영역이 넓어지고 있음. 민간 영역에서도 디지털포렌식 기술 개발과 연구, 보급에 뛰어들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디지털포렌식이 미래산업·일자리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음</p> <p>그러나, 아직 국가 차원에서 이를 하나의 독립적인 산업으로 인식함이 부족하여 신기술 연구, 개발의 육성 및 지원이 부족한 상황임</p> <p>이에 디지털포렌식을 하나의 미래산업으로 규정하고, 국가가 육성 및 지원 정책에 앞장설 수 있도록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함</p>	<p>2022-09-20</p>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이 법은 디지털포렌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디지털포렌식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디지털포렌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p> <p>② 디지털포렌식산업 육성 추진 체계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렌식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디지털포렌식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5조) - 디지털포렌식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디지털포렌식산업 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함 (안 제6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렌식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디지털포렌식 기술의 연구·개발, 기관간 기술협력 및 인력·정보 등의 교류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안 제8조) <p>③ 디지털포렌식사업자 지원 등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포렌식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은 디지털포렌식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함 (안 제9조 및 제10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렌식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유가 중대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렌식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재정지원,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창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p>④ 디지털포렌식산업 기반 조성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렌식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등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7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렌식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원 등 전문인력의 양성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렌식산업의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디지털포렌식산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안 제19조)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문화 체육관광 위원회	<p>•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의원 등 11인)」</p> <p>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 및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에미상 수상 등 우리나라 영상콘텐츠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우리나라 영화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글로벌 문화 콘텐츠 산업을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p> <p>하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은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를 두어 저작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하여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산을 양도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저작물 복제, 배포, 방송, 전송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를 모두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p> <p>영상제작사 등에 비해 창작자인 저작자의 협상력이나 정보가 부족함을 고려하였을 때 영상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 계약은 계약 당사자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에서 체결되고 있으며, 창작자들은 영상저작물 이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창작자들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 것이 현실임</p> <p>최근 유럽은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을 마련하여 글로벌 디지털 환경에서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이 언론간행물 등을 재사용하여 획득한 수익에 대한 대가를 저작자에게 분배하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으며, 남미 등 여러 해외 국가에서도 이미 영상물 이용에 따라 영상저작물 저작자에게 일정 부분 대가가 지급되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p> <p>이에 영상저작물 저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보상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저작자의 권리 보호 및 창작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2조, 안 제100조의2 신설 등)</p>	2022-09-19
환경노동 위원회	<p>•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0인)」</p> <p>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에서는 연간 73억개 이상의 마스크가 배출되고 있으며, 심지어 사용한 마스크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기에 재활용조차 할 수 없어 생활폐기물이 급격히 누적되고 있음. 특히 한국환경공단의 보고서에 따르면(‘20) 연도별 폐기물 증가는 코로나19 이후 2019년에 11.5%, 2020년에 7.7%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p> <p>그러나 생활폐기물의 증가에 비하여 매립지는 2030년 기준 총 56%가 사용만료 되는 등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매립지 및 소각지 등이 혐오시설로 인식되기에 폐기물 처리시설 신·증설도 어려운 상황임</p> <p>또한, 민간업체 중심 수거에 의존하는 현행 수거 방식은 시장 침체에 따른 수거중단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민 생활에 불편함을 주고 있으며, 지역내 처리시설의 부족으로 지역간 장거리 이동이 빈번하여 처리비용의 증가 및 지자체간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p>	2022-09-16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의 지역간 이동은 지역간 전파의 매개가 될 수 있는 등 발생지 수거의 필요성이 대두됨</p> <p>이에, 폐기물의 발생지 책임원칙을 확립하고 관할구역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반입협력금을 징수하도록 하여 지자체 스스로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하도록 하며, 지자체가 직접 폐기물을 재활용하도록 명문화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안 제5조의2, 안 제5조의3 신설 및 안 제13조의2 등)</p>	
	<p>•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동래의원 등 13인)」</p> <p>현행법은 정형적이고 전통적인 직접고용관계를 전제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해 왔음. 근로계약의 당사자만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이 대표적임</p> <p>그러나 현행법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도급·위탁·파견 등 간접고용 영역의 근로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최근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임금교섭 및 파업 사례가 대표적으로, 이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지배력을 가지는 자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간접고용 근로자는 여전히 근로계약의 당사자만을 교섭 대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임</p> <p>한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에서 면책됨. 그러나 그 범위가 협소하여 실제로는 쟁의행위가 종료된 이후 과도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압류·가압류 신청으로 노동조합의 존속과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실정임</p> <p>그러므로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여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과 실질적인 교섭력을 보장하고자 함 (안 제2조제2호 및 제3조의2 등)</p>	2022-09-16
	<p>•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p>	
	<p>현행법에서는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원활한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p> <p>그러나, 직상 수급인이 귀책사유없이 도급계약서 상의 지급일에 계약에 따른 도급금액을 지불하였음에도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유용하거나 체불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p>	2022-09-20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이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인건비 구분 지급 의무화를 모든 도급계약으로 확대하고자 함</p> <p>아울러 직상 도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의 전월(前月)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 결과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함 (안 제44조 등)</p>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본회의	9/27(화)	안건심의	
	9/28(수)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	
	9/29(목)	교섭단체 대표연설(국민의힘)	
상임위	아래 【별첨1】 참조		
국회도서관	9/26(월)	팩트북 2022-5호(통권 제97호) 발간 - 장애인 탈시설화	
	9/27(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5호 발간 - EU ‘디지털서비스법(안)’ 입법 동향	
	9/28(수)	「World & Law」 2022-18호 발간 - 전세계는 에너지 위기, 어떻게 해결하지?	
	9/29(목)	제1회 국가전략 전문가 간담회 - 대전환시대의 국가전략	국가전략 정보센터
	9/30(금) 14:00	제28차 AI와 국회포럼 - Digital Transformation from AI to Metaverse - 발표: 배순민 KT AI2XL 연구소장	1회의실
예산정책처	9/26(월)	「2022 대한민국 지방재정」 - 대한민국 지방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 안내서 발간	
입법조사처	9/28(수)	「NARS 입법·정책」 발간 -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별첨1] 제400회 국회 정기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특별위	9/29(목) 14:00	전체회의	민생경제특별위원회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에 관한 업무보고
	9/29(목) 14:00	전체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제도에 관한 공청회 개최 등
법사위	9/26(월) 13:30	법안1소위	- 법률안 심사 (민법)
	소위 산회후	전체회의	-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등 - 고유법 의결 (1소위 의결 시) - 타위법 심사
정무위	9/27(화) 13:30	전체회의	-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기재위	9/26(월) 10:00	전체회의	- 2021회계연도 결산 - 국정감사 관련 안건 - 현안보고 (한국은행 등)
문체위	9/27(화) 미정	전체회의	-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9/28(수) 본회의 산회후	전체회의	- 「광고산업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
	9/28(수) 14:00	전체회의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
	9/28(수) 16:00	전체회의	-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 및 「국악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
농해수위	9/26(월) 15:00	전체회의	- 안건 미정
산자위	9/26(월) 10:00	전체회의	-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9/30(금) 오전	현장시찰	-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복지위	9/27(화) 10:00	전체회의	-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국토위	9/28(수) 10:00	전체회의	-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의 건
정보위	9/28(수) 본회의 산회후	전체회의	- 국가정보원 최근 북한 동향 현안보고
	9/28(수) 14:00	전체회의	- 정보사령부 현안보고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9/26(월) 10:00	온라인 금융 상품 판매중개업 진출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방향	김희곤·이정문 의원실	전경련회관 루비홀
9/26(월) 10:00	공동체라디오방송의 공적 역할과 활성화 정책	정필모 의원실,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의원회관 4간담회실
9/26(월) 14:00	디지털대전환 시대를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 망 이용대가 제도 문제없나?	박완주·김영주 의원실	의원회관 4간담회실
9/26(월) 15:0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과 과제 - 제2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	박대출 의원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9/27(화) 10:00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노동자·판매자 실태 진단 토론회 - coupang 사례를 중심으로	민병덕·우원식· 박용진 의원실 등	의원회관 6간담회실
9/27(화) 10:00	『글로벌 첨단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방안』 세미나	안병길 의원실	의원회관 1간담회실
9/28(수) 09:30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 법 공청회	조정훈·이탄희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9/28(수) 14:00	필수의료,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서정숙 의원실	의원회관 7간담회실
9/28(수) 14:00	지상파 UHD 본방송 5년 평가와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정필모 의원실	국회박물관
9/29(목) 14:00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강준현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9/30(금) 09:30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R&D 현황과 과제	김영식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9/30(금) 10:00	21세기 해양수산포럼 - 수산 규제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안병길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9/30(금) 14:00	게임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토론회 - 게임산업 현주소와 앞으로의 과제는?	이용호 의원실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53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도서관	9/20(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4호 발간 - 일본의 소유자불명토지 이용에 관한 입법례	
	9/20(화)	「현안, 외국에선?」 제44호 발간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주요 내용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9/23(금)	「최신정책정보:국내」 제101호 발간 - 최근 취업자수 증가에 대한 평가 등	
예산정책처	9/20(화)	「예산정책연구」 제11권 제3호 발간	
입법조사처	9/22(목)	「이슈와 논점」 발간 - 무투표당선 제도의 쟁점과 대안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에 관하여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9/19(월) 14:00	<u>가상자산 ICO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u>	민병덕 의원실, 블록미디어	의원회관 3세미나실
9/19(월) 15:30	<u>NBS(자연기반해법) 및 TNFD(자연기반 재무정보공개 협의체)를 연계한 ESG 강화 방안</u>	유의동 의원실, 국회기후변화포럼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9/20(화) 11:00	<u>2022 국가브랜드 컨퍼런스</u>	이용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9/20(화) 14:00	<u>양성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법·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 향 토론회</u>	조명희·변재일 의원실, 국회ICT융합포럼	의원회관 2세미나실
9/21(수) 09:30	<u>K-반도체 대전환 방향설정과 미래전략 국회 세미나</u>	최형두·박성민· 조응천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9/21(수) 10:00	<u>미디어, 미래를 위한 개혁 大토론회</u>	김기현 의원실, 미디어미래비전포럼 등	의원회관 대회의실
9/21(수) 11:00	<u>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u>	조명희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9/22(목) 10:00	<u>원전 강국을 위한 원전해체 산업 현황과 향후 과제</u>	박완주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실
9/23(금) 10:00	<u>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정책토론회</u>	윤두현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9/23(금) 15:00	<u>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토론회</u> - 현행 사행성게임물 확인 제도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하태경 의원실,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의원회관 8간담회실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 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 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성범** | 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 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방세희** | 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 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나인선** | 변호사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최유리** | 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 **성재열** | 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 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박건백** | 변호사 T. 02-316-4670 E. gbapark@shinkim.com
- **김은혜** | 변호사 T. 02-316-1736 E. ehkim@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